



제414회 국회 (정기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공직유관단체에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적용 >

■ 이종성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26016호)

2024. 5.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전문위원 임재금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공직유관단체에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적용	3

I. 제안경위

2023년 12월 20일 이종성위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3년 12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에 대하여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수의 1천분의 31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면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기관·출연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수에 대하여 1천분의 36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특례를 두어 공공부문에서의 장애인 고용의무를 보다 강하게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은행 등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이나 임원 선임의 승인을 받는 등 공공성과 책임성이 민간 사업주에 비하여 높게 요구되는 ‘공직유관단체’는 현행법상 장애인의 의무고용률 특례 대상인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고 민간 사업주와 동일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적용받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에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현행법상 공공기관에 대한 장애인 고용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공공부문에서의 장애인 고용촉진의 실효성 제고에 보다 기여하고자 함(안 제28조의2).

Ⅲ. 검토의견

1. 공직유관단체에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적용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¹⁾에 따라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한 기관·단체로서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인 기관·단체에 대하여 현행법상 공공기관에 대한 장애인 의무고용률('24년 기준 3.8%)을 적용하는 내용임(안 제28조의2).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8조의2(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의 특례) 제28조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기관·출연기관은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수에 대하여	제28조의2(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장애인 의무고용률의 특례) -- ----- ----- ----- ----- 출자기관·출연기관,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공직

1)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공직유관단체) ① 제9조제2항제8호에 따른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규모, 임원선임 방법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1. 한국은행
2. 공기업
3. 정부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재출자·재출연을 포함한다), 그 밖에 정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단체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재출자·재출연을 포함한다),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단체
5. 임원 선임 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동의·추천·제청 등이 필요한 기관·단체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원을 선임·임명·위촉하는 기관·단체

여 장애인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고용률에 해당하는 장애인 수를 계산할 때에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자율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 유관단체는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현행 법령은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그 근로자 총수의 1천분의 31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면서,²⁾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기관·출연기관에 대하여는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수에 대하여 1천분의 38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특례를 두어,³⁾ 사회적

2) 「장애인고용법」제28조(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의무) ①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총수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의무고용률”이라 한다)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

「장애인고용법 시행령」제25조(사업주의 의무고용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의 장애인 상시 근로자 의무고용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015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1000분의 27
2.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1000분의 29
3. 2019년 이후: 1000분의 31

3) 제28조의2(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의 특례) 제28조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기관·출연기관은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수에 대하여 장애인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1.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34
2.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36
3. 2024년 이후: 1천분의 38

책임이 보다 강하게 요구되는 공공부문에 장애인 고용의무를 더욱 강하게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KBS,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공직유관단체의 경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이나 임원 선임의 승인을 받는 등 공공성과 책임성이 민간 사업주에 비해 높게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등에 따라 공공기관등으로 지정되지 않아 민간 사업주와 동일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적용받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업무수행에 있어 민간 사업주보다 높은 공공성을 보이고 있는 기관, 단체들에 공공기관등과 동일한 의무고용률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 고용을 더욱 촉진하려는 점에서 입법의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보임.

현행 「공직자윤리법」 상 공직유관단체는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공직유관단체를 정부·지자체의 재정지원 규모, 임원선임 방식 등에 따라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정하고 인사혁신처장이 매 반기말 고시하고 있음.⁴⁾

4) 「2024년 상반기 적용 공직유관단체 지정 고시」(인사혁신처고시 제2023-8호)

***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단체의 범위(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의2)**

- ①한국은행, 공기업
- ②정부·지자체의 장이 임원을 선임, 임명 위촉 또는 승인, 동의 추천하는 기관·단체
- ③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공단
- ④정부·지자체로부터 연간 10억 이상 출자·출연 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 ⑤정부·지자체 업무를 위탁수행하거나 대행하면서 예산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기관·단체
- ⑥정부·자치체의 출자·출연을 받은 기관·단체가 재출자·재출연한 금액이 자본금의 전액이 되는 기관·단체 ⑦공공기관 운영법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023년 하반기 기준 공직유관단체는 총 1,408개로서, 이 중 장애인 고용의무 대상기관(50인이상)은 906개이고, 이 중 현행 법령하에서도 공공기관 의무고용률이 적용되는 기관은 769개이며, 개정안에 따라 의무고용률이 새롭게 상향(3.1% → 3.8%)되는 민간기관·단체는 137개소 인바,

< 공직유관단체 현황 >

공직유관단체 수 (23. 하반기 기준)	고용의무 대상			고용의무 비대상 기관 수(50인미만)
	기관 수	공공기관등	민간기관·단체**	
1,408	906	769	137	502

* 인사혁신처 고시 2023-5호 「하반기 적용 공직유관단체 지정 고시 기준」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법인번호 조회 기준

* 고용의무 기관은 2022.12. 기준

** 별첨자료 참고

*** 자료: 고용노동부

개정안이 통과되면 137개의 공직유관단체가 2025년부터 공공기관과

동일한 3.8%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적용받아 장애인 고용의무인원이 461명가량 증가할 것으로 추산되어, 장애인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예상되는 장애인 고용의무인원 증가수준 >

(기준: 2022.12., 단위: 개소, 명)

민간기업	고용의무인원(A) (민간 의무고용률 3.1% 적용)	고용의무인원(B) (공공 의무고용률 3.8% 적용)	고용의무인원 증가인원 (B)-(A)
137	1,933	2,394	461

** 자료: 고용노동부

다만, 공직유관단체에 강화된 장애인 고용의무를 부여할 경우, 장애인고용부담금⁵⁾, 장려금⁶⁾,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기관 명단공표⁷⁾ 등에서도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게 됨.

그런데 공직유관단체 중 공공기관, 지방공사·지방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포함되지 않는 기관은 정부·지자체로부터 연간 10억

5) 33조(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등) ①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상시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6) 제30조(장애인 고용장려금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 안정을 위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제28조제1항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사업주를 포함한다)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고용장려금은 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에서 의무고용률(제28조제1항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할 때에도 같은 비율을 적용한다)에 따라 고용하여야 할 장애인 총수(그 수에서 소수점 이하는 올린다)를 뺀 수에 제3항에 따른 지급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33조에 따라 낼 부담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7) 제29조(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계획 수립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의 고용에 관한 계획과 그 실시 상황 기록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주에게 그 계획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8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고용계획의 수립 의무 또는 장애인 고용 의무를 현저히 불이행하면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이상 출자·출연을 받는 등의 이유로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어 있고, 해당 기관·단체의 조직원 중 일부에 대하여 「공직자윤리법」 중 일부 규정이 적용되고 있는바, 이러한 기관·단체들을 장애인 고용의무와 관련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과 동일하게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지 여부에 대하여는 추가적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고용노동부는 공직유관단체는 일부 윤리규정(재산등록 및 공개, 퇴직자 취업제한 등)에 대하여만 조직원에게 공직자와 유사하게 적용받게 하는 단체로, 기관의 운영(임원, 회계, 경영평가등)에 관한 사항이 법률에 근거하고 있는 공공기관⁸⁾과는 달리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8) 제28조의2(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의 특례) 제28조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기관·출연기관은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수에 대하여 장애인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참고

공직유관단체 중 민간기관단체 리스트 (137개)

연번	기관·단체명	연번	기관·단체명
1	한국방송공사	71	경찰공제회
2	서울대학교	72	한국건설기술인협회
3	인천공항시설관리 주식회사	73	대전광역시체육회
4	인천국제공항보안 주식회사	74	재단법인 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연합회
5	농업협동조합중앙회	75	서해철도(주)
6	한국은행	76	한국지방재정공제회
7	인천공항운영서비스 주식회사	77	한국대학교육협의회
8	금융감독원	78	경상북도체육회
9	항공보안파트너스(주)	79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10	(주)서울메트로환경	80	광주광역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11	(주)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	81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12	남부공항서비스(주)	82	전라북도체육회
13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83	강원도체육회
14	(사)대한산업안전협회	84	과학기술인공제회
15	KAC공항서비스	85	미추홀노인인력개발센터
16	주식회사 엘에이치사옥관리	86	한국전기기술인협회
17	(재)과학기술시설관리단	87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
18	인천대학교	88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19	(주)한국거래소	89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20	산림조합중앙회	90	재단법인국립발레단
21	한국선급	91	한국교육시설안전원
22	한국예탁결제원	92	울산광역시체육회
23	한국교육방송공사	93	경상남도체육회
24	재단법인 한국특허기술진흥원	94	울산항만관리
25	대한민국재향군인회	95	재단법인 대구기계부품연구원
26	대한결핵협회	96	아이비케이신용정보(주)
27	사회복지법인 송덕원	97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8	엘에이치주거복지정보 주식회사	98	한국엔지니어링협회
29	(주)대구메트로환경	99	언론중재위원회
30	한국교직원공제회	100	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회
31	인구보건복지협회	101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32	(주)부산항보안공사	102	한국소방시설협회
33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	103	(사)벤처기업협회
34	인천광역시체육회	104	부산광역시장애인체육회
35	서울농수산물시장관리주식회사	105	전라남도체육회
36	한국증권금융(주)	106	포항시체육회
37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107	사회복지법인 농애원
38	신용회복위원회	108	재단법인국립합창단
39	재단법인과학기술보안관리단	109	대전광역시장애인체육회
40	한국잡월드파트너즈주식회사	110	(재)국립정동극장
41	제이디씨파트너스(주)	111	(재)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42	한국표준협회	112	한국지방세연구원

연번	기관·단체명	연번	기관·단체명
43	한국도로공사시설관리(주)	113	재단법인국립극단
44	인천항보안공사	114	충청북도체육회
45	중소기업중앙회	115	경기도장애인체육회
46	한국생산성본부	116	지방공기업평가원
47	인천메트로서비스주식회사	117	대구광역시장애인체육회
48	수원시체육회	118	서울예술단
49	한국광기술원	119	유네스코한국위원회
50	군인공제회	120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51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21	만수종합사회복지관
52	한국지역정보개발원	122	사회복지법인 삼다
53	서울특별시체육회	123	해외건설협회
54	부산광역시체육회	124	한국법령정보원
55	알이비파트너주식회사	125	재단법인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56	대구광역시체육회	126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57	한국해운조합	127	광주광역시장애인체육회
58	사단법인대한전문건설협회	128	경기도체육회
59	김포골드라인운영(주)	129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60	여수광양항만관리주식회사	130	인천광역시도서관발전진흥원
61	대한지방행정공제회	131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62	한국소방안전원	132	성남시체육회
63	한국전파진흥협회	133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
64	광주광역시체육회	134	재단법인 스포츠윤리센터
65	대한건설협회	135	울산광역시장애인체육회
66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136	재단법인한국교육환경보호원
67	한국전기공사협회	137	대한노인회
68	한국한센복지협회		
69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70	(재)카이텍시설관리단		

문 의 처

02)6788-5539